

노 후 자 동 차 교 체 감 면 신 청 서 [] 사전 폐차 또는 수출
[] 사후 폐차 또는 수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관리번호	처리기간 즉시
------	---------

신청인

① 성명(법인명)		②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
③ 주소(사업장 소재지)		④ 연락처	

노후자동차

신차(감면 신청차량)

⑤ 차대번호		⑩ 차대번호	
⑥ 자동차등록번호		⑪ 자동차등록번호	
⑦ 최초등록일		⑫ 최초등록일	

⑧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여부	⑬ 산출세액	감면 전	감면 후	감면액
	개별소비세			
	교육세			
	부가가치세			

⑨ 말소등록일		⑭ 반출신고	사업자(하치장)번호	
			반출지(하치장)상호	

첨부서류

- 자동차등록원부 1부 (노후자동차, 신차 각 1부)
- 주민등록증(사업자등록증) 사본
*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가능
- 주민등록표 초본, 「상업등기법」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

수수료
없음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1조제1항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며,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(개별소비세액, 교육세액, 부가가치세액)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회사 귀하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이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,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회사 (인)

세무서장 또는

세관장 귀하

작성방법

-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- "⑥ 자동차등록번호"란: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.
- "⑧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여부"란: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"Y"라고 적습니다.
- "⑬ 산출세액"란 중 "감면 전"란: 노후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.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.